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법률 제19243호, 2023. 3.21. 공포, 2024. 3.22. 시행)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 신설(안 제2조)
- 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서류 중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삭제(안 제12조 제2항제5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대통령령 제 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중 “「고도 보존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를 “법 제4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고도의 지정절차를 거친 고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7조의 절차를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고령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제2조(고도의 지정절차를 거친 고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고령을 말한다.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 ----- ----- ----- ----- ----- ----- -----.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u>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u> ③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연락처	(042) 481 - 3110